

임시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 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신규 기술·서비스	명칭		
	유 형	기술인 경우 () 서비스인 경우 ()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()	※ 해당 난에 표시(√)
	주요내용		
임시허가 신청 사유	1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(법 제37조제1항제1호) ()		해당 난에 표시(√)
	2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 하거나 불합리한 경우(법 제37조제1항제2호) ()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1부 가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사업범위·추진방법·추진일정 2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1부 4.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
-------------	--

처리 절차

